

뉴질랜드의 쇠고기이력추적제도 소개

뉴질랜드는 광우병, 부루셀라 등 기타 가축질병 등에 청정지역이나, 야생동물에 의해 우결핵이 발생하고 있어 우결핵 근절이 현재로는 주요 현안이다. 우결핵 통제 및 가축에서 질병발생시 이들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가축식별시스템(Animal Identification System)을 1999년부터 시행 중이다.

이는 지난 1995년 와이헤케섬에 구제역을 퍼뜨리겠다는 험박편지 소동이 벌어진 적이 있었다. 이 당시 정부는 수백명의 인원을 투입해 와이헤케섬을 전면통제하고 섬 안의 모든 가축에 대한 추적에 들어갔으나 이 작은 섬의 소 16천여두, 양 1만여두의 개체별 이동사항을 파악하는데 수 주일이 걸렸다.

이 소동을 계기로 질병발생시 신속한 정보획득 및 개체별로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을 공감했으며, EU 등 수입국으로부터 개체별 이력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육류 생산량의 90% 정도를 수출하는 뉴질랜드로서는 개체별 이력 추적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

1999년도에 가축식별시스템(Animal Identification System)을 도입해 출생후 30일 이상된 가축(소·사슴)의 이동시 귀표장착 및 개체식별을 의무화(Biosecurity Regulation)시켰으며 같은 해 일종의 가축이동 증명서인 가축 상태 신고서도 축군 이동시 발급하는 것을 의무규정(Animal Products Act)으로 정했다.

이밖에 2009년 소와 사슴에 대한 개체별 이력추적제도 시행을 목표로 'Animal ID and Traceability Working Group'을 2006년 3월에 발족해 개체별 이력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가축상태신고서(Animal Status Declaration, ASD) 발급 의무화

가축식별시스템에서는 출생후 30일 이상된 가축(소·사슴)의 이동시 귀표를 장착하고 일종의 이동 증명서인 가축상태신고서(Animal Status Declaration, ASD)를 발급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가축이동시 농가, 가축시장은 ASD 사본을 1년보관, 도축장은 원본을 4년보관해야 된다.

귀표가 없거나 ASD가 없는 소는 도축대상 또는 작유대상에서 제외되며, 수존용 쇠고기는 ASD가 있어야만 검역증명서가 발급된다. 귀표 미장착 및 귀표를 변조 또는 제거할 경우, 개인은 최고 5,000NZ\$, 법인은 15,000NZ\$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뉴질랜드의 가축식별시스템은 '국가 우결핵 관리 정책'을 시행하는 가축위생위원회(Animal Health Board, AHB)에서 총괄하며, 모든 소·사슴에 대한

축군관리, 귀표ID관리 등은 담당한다. 가축식별시스템의 번식시행을 위해 준정부기관인 가축위생위원회에서 동 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동 제도의 감독은 준정부기관인 식품안전국(New Zealand Food Safety Authority, NZFSA)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도축장(가공장)에 직원이 상주하면 시 존하농가로부터 ASD 접수 및 보관 등의 관리·감독하며 유통과정에서 문제발생시, 생산단계까지 추적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가축식별시스템을 통해 가축이 태어날 당시의 축군, 우결핵 검사시 가축이 속한 축군, 도축·존하시 가축이 속한 축군 등을 알 수 있어 질병에 감염된 가축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다.

이원화된 개체식별체계 운영

AHIB번호와 LIC번호 2종류의 개체식별체제로 이원화해 운영하고 있다.

AHB번호는 가족위생위원회(AHB)에서 발급하는 귀표 ID번호로서 동 기관에서 관리하는 축군번호(Herd Number)가 포함되어 있다.

LIC번호는 농가가 가족개량농사(LIC)에서 관리하는 축군번호의 표시를 원할 경우 LIC에서 발급하는 귀표 ID번호가 사용 가능하다.

<표1. 개체식별체계>

개체식별체계		예시
AHB ID (10자리)	AHB 축군번호(7) + 개체번호(3)	1234576528
MINDA ID (9자리)	LIC 축군코드(4) + 개체번호(5)	BCDF99523

귀표 부착

귀표는 1차귀표와 2차귀표 두 종류가 있으며, 소 귀 양쪽에 부착해야 한다. 귀표의 주분은 농가가 인

<표2. 귀표 종류>

종류	귀표모형	비고
1차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귀표에는 축군번호, 개체번호바코드가 인쇄되어 있음 ※경우에 따라 개체식별번호에 공급년도를 넣을 수 있음
2차귀표		축군번호만 표시
3차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귀표와 동일하나 값싼재질 사용 도축장 출하시에는 1차귀표 또는 도축장용 귀표만 달아도 됨
재장착용 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표탈락시, 축군 또는 개체식별이 가능한 경우에만 재발급 ※귀표에 'R' 문자가 인쇄됨 축군 또는 개체식별 불가능시, 새로운 ID 부여



• 뉴질랜드 가족위생위원회(AHB)의 업무협의 모습

터넷을 통해 주문하며, 이때 전자DB에 자동인식돼 확인된다(구입비용(2.5NZ\$)은 농가부담 원칙).

정부의 지원

우선 가족위생위원회(AHB)를 주축으로 기존시스템 바탕위에 전자귀표(RFID)를 포함한 개체별 이력추적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2009년 소와 사슴에 대한 개체별 이력추적제도 시행을 목표로 'Animal ID and Traceability Working Group'을 2006년 3월에 발족하였으며, 뉴질랜드 식육양모협회에서 실제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생산자단체, 업계에서도 개체별 이력제도 도입 및 전자귀표(RFID) 사용을 찬성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철저한 수혜자 부담 원칙으로 제도 도입시 정부 보조금 지급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 사업본부사업개발팀 이원복 팀장 운영권 과장대리